

위임전결권한규정

제정 2024. 03. 04.

주식회사 파인에스엔에스

위임전결권한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정하며,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책임과 권한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
- ② 이 규정은 각 직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수행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전결권한)

각 직책은 업무처리에 있어 『위임전결기준』 표에서 정한 전결위임권한을 가진다. 다만,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행사의 범위)

이 규정에 명시된 권한의 행사는 법령,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권한행사의 제한)

- ① 각 직책은 위임전결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위 직급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- ② 각 직책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의보고, 통지, 의뢰 등의 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.
- ③ 특정위임 사항에 대한 이 규정의 조항과 법령, 정관 및 기타 규정의 조항과 상충할 때에는 그 상위 직급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- ④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사안이 동일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 전결권자의 전결에 의한다.

제5조(부재 또는 비상시의 권한위임)

- ① 특정한 위임전결 권한사항을 행사할 해당직위가 없을 때에는 그 상위직위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전결권자 부재 시에는 그 전결권을 차 상위 전결권자가 대행하고 후 보고 한다. 다만,

전결권자가 대행할 자를 지명하였을 때는 지명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 각 직책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항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권한 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긴급 조치하고 이를 상위 직위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책임)

각 직책은 위임전결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7조(해석)

① 이 규정에서 건당이라 함은 지출결의서 혹은 품의서상 1회에 처리되는 하나의 안건을 말하며 이를 분할하여 처리하거나 그 일부분만을 처리하지 못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임원이 결재하고 예산 초과 시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다.

③ 이 규정은 회사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.

제8조(대외관계)

각 직책은 위임전결 권한사항이라도 대외관계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위임)

① 권한표에 명시된 결재권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한의 재위임은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며 공식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

② 재위임의 양식은 [별표1] 양식으로 한다.

제 2장 위임전결 권한표

제10조(권한표상의 전결구분)

① 이 규정에서 “본부장”이라 함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각 직군 본부의 총 책임자를 말한다.

② 위임 전결표상 본부장이 없는 조직은 CFO 또는 대표이사가 전결한다.

제11조(권한표상의 “●” 와 “비고”)

① 이 권한표에 표시된 “●”는 담당부서의 직위를 의미한다. 담당부서 이외 직위자의 전결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합의 및 보고(“◎”)를 요하는 사항들을 “비고”란의 표시에 따른다.

② 담당 부서란에 부서가 명시된 경우 명시된 부서에 위임된 것을 의미하며, 공란인 경우 공통적용을 의미한다.

제12조(위임전결 권한표)

각 업무와 관련한 위임전결권한은 아래의 표와 같다.

제 3 장 규정의 개정

제13조(규정의 제·개정 등)

이 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로 시행하며, 시행이전의 업무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
□ 위임전결기준

별첨1. 위임전결기준표 참조

[별표1]

위임전결권한 재위임표

위임전결규정 전결권한을 다음과 같이 재위임 한다.

< >

업무내용	전 결 구 분				담당부서	비고
	팀장	본부장	CFO	대표이사		
						기존 권한
						재위임 권한